

<붙임>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.

1. 정관변경사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2024. 1. 2. 법률 제19913호, 2024. 7. 3. 시행)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

2. 주요 변경내용

이사회의 권한에 '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 사항' 반영

신구조문대비표

1. 정관 변경일: 2024년 12월 30일

2. 정관 변경사유: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및 단순 문구 수정

3. 정관 변경내용

정 관	정 관
<p>제2조 목적 (1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가) ~ (라) (생략) (2) (생략)</p>	<p>제2조 목적 (1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가) ~ (라) (현행과 같음) (2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,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(1)권, 오(5)주권, 일십(10)주권, 오십(50)주권, 일백(100)주권, 오백(500)주권, 일천(1,000)주권, 일만(10,000)주권 및 일십만(100,000)주권의 9종으로 한다. 다만, 주주가 위와 다른 주식 수를 표시한 주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주주의 비용으로 그에 따라 적절한 단위의 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,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(1)주권, 오(5)주권, 일십(10)주권, 오십(50)주권, 일백(100)주권, 오백(500)주권, 일천(1,000)주권, 일만(10,000)주권 및 일십만(100,000)주권의 9종으로 한다. 다만, 주주가 위와 다른 주식 수를 표시한 주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주주의 비용으로 그에 따라 적절한 단위의 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
<p>제21조 이사,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 (1) ~ (3) (생략) <신설></p>	<p>제21조 이사,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 (1) ~ (3) (현행과 같음) (4) 이사회는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.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대표이사 선임 결의 시에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.</p>
<p>제2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<신설></p>	<p>제25조 이사회의 권한 및 구성·소집 (1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(가)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(나)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(다)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(라)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(마)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(바)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</p>
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(1)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p>(2)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(3)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</p>	<p>사항</p> <p>(사)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(아) 대주주 ·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</p> <p>(자) 관계 법령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</p> <p>(차)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 결의를 정하는 사항</p> <p>(2) 제1항 이외의 이사회의 심의 · 의결사항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다.</p> <p>(3) 이사회의 권한 중 지점의 설치 · 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</p> <p>(4) 이사회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배구조법”)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.</p> <p>(5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</p> <p><삭 제></p> <p>(6)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<삭 제></p>
<p>제30조 재무제표</p> <p>(1)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(가) 대차대조표;</p> <p>(나) 손익계산서;</p> <p>(다)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;</p> <p>(라) 위 (가), (나)와 (다)에 대한 부속명세서; 및</p> <p>(마) 영업보고서.</p> <p>(2) ~ (4) (생략)</p>	<p>제30조 재무제표</p> <p>(1)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(가) 대차대조표</p> <p>(나) 손익계산서</p> <p>(다)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</p> <p>(라) 위 (가), (나) 및 (다)에 대한 부속명세서</p> <p>(마) 영업보고서</p> <p>(2) ~ (4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1조 이익의 처분</p> <p>회사는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</p> <p>(가) ~ (바) (생략)</p>	<p>제31조 이익의 처분</p> <p>회사는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.</p> <p>(가) ~ (바) (현행과 같음)</p>